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00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문별 검토	12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12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신고제	15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	18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26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벌칙	3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

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와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특별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고제, 취급시설 허가·신고제,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등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내용 】

조	조 제목(개정안 기준)	개정 내용
제2조	정의	(제2조제9호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
제14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제14조 전부개정)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신고제 도입
제14조의2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14조의2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제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도입
제14조의3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14조의3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후 사후관리 규정 도입

조	조 제목(개정안 기준)	개정 내용
제14조의4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14조의4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자의 학력 및 경력 조건 등 취급 기준 도입
제14조의5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제14조의5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자의 정기적 교육 수강 의무 도입
제57조	벌칙	(제57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 신설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안전관리 제도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입

병원체란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로, 세균·바이러스 등이 존재함.¹⁾ 현행법 체계에서는 ① 병원체가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된다면 “감염병병원체”로서 질병관리청의 관리를 받고, ② 병원체가 가축 등 동물의 병의 원인이 된다면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으며, ③ 병원체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²⁾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가령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은 ① 감염병병원체, ②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③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모두 해당되어, 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모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음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음

규정」(이하 “「수의생명자원규정」”이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등의 법령 또는 행정규칙⁵⁾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병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병원체에 비하여 법적 관리제도 측면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위험병원체와 관련된 규정임.

사람 대상의 감염병병원체의 경우, ① 2005년에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의 전신인 「전염병예방법」에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도입되었고, ②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의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허가·신고제가 법률로 상향되어 규정되는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법적 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되어 왔음.

특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관련해서는 2017년 이전까지는 「감염병예방법」상에 안전관리 등급제도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상 유전자변형생물체⁶⁾⁷⁾ 취

5)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법률,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은 예규에 해당함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

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17년에 「감염병예방법」 상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문제가 해소된 바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경우, 현재 법률 수준에서의 병원체 관리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분리신고⁸⁾와 수입허가⁹⁾ 규정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다른 법률상의 규정과 고시 등 행정규칙을 활용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대표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첫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류와 관리의 근거규정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인 「수의생명자원규정」이 활용되고 있음.

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7) 영문명칭인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칭인 **LMO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수의생명자원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서 수의생명자원¹⁰⁾에 대한 분양승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¹¹⁾함에 따라 고시된 행정규칙으로, 주로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수의생명자원규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특별관리병원체, 일반관리병원체 및 기타병원체의 3단계로 분류하고 있고,¹²⁾ 이 중에서 정의상 「감염병예방법」상의 고위험병원체에 대응되는 특별관리병원체(총 63종)에 대하여 제3자 분양승인¹³⁾ 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0)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험물과 그 실험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1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2)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

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다. 기타병원체 :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된 병원체

13)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0조(병원체의 제3자분양)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에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의생명자원규정」을 통한 우회적인 안전관리는 ① 근거규정의 형식이 고시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과태료 등 실효성 확보수단을 규정하기 어렵고, ② 권한 위임의 근거인 「농업생명자원법」의 목적이 가축전염병 방역이 아닌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둘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으로, 「감염병예방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상 안전관리 등급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은 사람 대상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¹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데,¹⁵⁾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훈령에서 이들 법률상의 안전관리 등급을 활용하여 구제역 등 고위험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에 관련한 진단기관의 시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예방법」 16)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17)상 안전관리 등급 분류 】

등급	취급 내용	허가/신고 대상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2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3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4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에 따른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기관의 시설 요건 】

가축전염병	시설 요건	근거규정
구제역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럼피스킨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질병관리청)을 득한 기관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질병관리청)을 득한 기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조류 인플루엔자 (AI)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질병관리청)을 득한 기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에 따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기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허가를 받아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취급하고 있음.¹⁸⁾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을 소관하는 질병관리청 소관의 생물안전 등급을 활용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수의분야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별도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8)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생물안전연구동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SL-3, BSL-3) 인증 획득”, 2023. 5. 15.

경기도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신규 인증 취득”, 2020. 12. 1.

2. 조문별 검토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히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관련 연구 활성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 <u>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u> ”란 <u>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정의된 사항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는 정의내용과 정의명칭이 각각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i) 정의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¹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정의내용에서 국민건강에의 심각한 위험을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에 인수공통감염병²⁰⁾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원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ii) 정의명칭과 관련해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명칭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정의규정 이후 실체규정인 제14조에서 “고위험 병원체”라는 약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약칭의 사용은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의조항에서 명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¹⁾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31.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의를 신설하되, 병원체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다만, 질병관리청은 ① 현재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의를 제한할 필요성²²⁾이 있고,

② 약칭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9호의 “고위험병원체”와 동일하여 혼동의 소지가 있는바, 이를 중복되지 않는 약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약칭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가축 병원체” 등의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에는 약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입법경제적 이점은 크지 않고, 약칭으로 인한 이해가능성 저하의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됨.

22) “인체위해 병원체를 제외한 가축위해 병원체” 등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신고제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분양 및 이동에 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현장조사·관련 기록 제출 등의 보완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신고 대상 가축²³⁾, 사료, 동물·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이하 “고위험 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 분양·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

현행	개정안
<신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⑤ 고위험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 병원체 보유 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② 가축전염병 연구·검사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시로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병원체의 분리 외에 분양·이동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생명자원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연구·검사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별도 관리 규정이 없음.

23)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약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고 대상 가축”을 “신고대상 가축”으로 자구정리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현행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제를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분양·이동 신고제로 개편하고, 제도 운영 등에 있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해서만 분리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의 경우 현재 “모든 가축전염병 병원체”²⁴⁾에 대하여 분리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²⁵⁾를 분리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유출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체의 취급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의 분리신고 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모든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인력·조직·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임.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5) 개정안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신고 대상 가축, 사료, 동물·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이하 “고위험 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와 그 취소,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

현행	개정안
	<u>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²⁶⁾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령²⁷⁾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²⁸⁾를 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²⁹⁾ 한다.</u> <u>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한 자 중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령³⁰⁾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u> <u>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³¹⁾ 제6항에 따른 안전</u>

현행	개정안
<신설>	<u>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u> <u>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제14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u> <u>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u>

현행	개정안
	<u>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u>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

현행	개정안
	는 고위험 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위험가축 병원체³²⁾ 취급시설 등의 폐쇄 등의 절차 및 신고, 제2항에 따른 이행 계획 제출 및 그 이행, 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폐쇄 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취급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이를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그

26)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27) “농림축산식품령”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28) “변경 신고” → “변경신고”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29) “신고하여” → “신고하여야”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30) “농림축산식품령”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31) “자는” → “자가”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32) “고위험가축 병원체” → “고위험 병원체”로 자구정리할 필요가 있음

런데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리하에 ① 안전관리 등급별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신고제를 운영하고, ② 허가·신고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③ 준수사항·점검 규정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내용 역시 유사 입법례인 「감염병예방법」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조항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구제역 등 위험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진단시설의 설치·운영자들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 등급에 따른 허가를 받고 있는데,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은 자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어 허가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하여 사람 대상의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과거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규정이 부재하던 기간 동안 이미 법적 안전관리 등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상의 제도를 활용하여

취급시설 허가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감염병예방법」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제도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둔 바 있음.³³⁾

또한, 안 제14조의2제1항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로 하여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설의 직접 설치·운영 의무와 사용계약 체결 의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사용계약 체결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출될 경우 국내 축산업 등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급시에 안전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

33) 법률 제151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유·관리 및 이동하려는 모든 사람이 병원체 취급시설을 보유하기는 어려우므로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한 인정하도록 한 것 역시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는 입장임.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가진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취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수강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4(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 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학,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

현행	개정안
<신설>	<u>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u>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①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면서, 유사 입법례인 「감염병예방법」의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³⁴⁾ 및 교육수강 의무³⁵⁾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자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전공으로는 ‘수의학,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요구하면서, 경력으로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만을 요구하고 있는바, 양자를 합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므로,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 관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게 하여 생물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문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벌칙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57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분양한 자</u>
<u><신설></u>	<u>3의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u>
<u><신설></u>	<u>3의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신설></u>	<u>3의5.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u>
<u><신설></u>	<u>3의6. 제14조의4의 기준을 준수하</u>

현행	개정안
<u>3의2. · 3의3.</u> (생략) 4. ~ 9.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u>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u> 본문 · 제3항, 제23조제1항 · 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 5. (생략)	<u>지 아니한 자</u> <u>3의7. · 3의8.</u>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2조제1항</u>----- ----- ----- 4. · 5. (현행과 같음)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는 개정안의 정의상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과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안전관리 규정들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① 분리·분양 및 이동 신고제도, ②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③ 취급시설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④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른 준수사항, ⑤ 취급자의 학력 및 경력 등의 기준에 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다만,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⁶⁾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세부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어떠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³⁷⁾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개정안은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이를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벌칙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하여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취급시설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⁸⁾

36) 개정안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한 자 중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5.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7)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이 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됨.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9.)

둘째, 개정안은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기존의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⁹⁾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비하여 그 변경의 수준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 규정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제재수준을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감염병예방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⁴⁰⁾

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9) 개정안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는 벌칙 등의 제재규정은 병원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자와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고위험 병원체의 정의(안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험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고(안 제14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신고 대상 가축, 사료, 동물·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이하 “고위험 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 분양·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고위험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 병원체 보유 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 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안 제14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한 자 중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안 제14조의3)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는 회피하거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고위험가축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폐쇄 등의 절차 및 신고, 제2항에 따른 이행 계획 제출 및 그 이행, 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폐쇄 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기준(안 제14조의4)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 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학,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안 제14조의5)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①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벌칙(안 제57조)

1) 고위험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고(안 제14조)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분양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안 제14조의2) 관련

가.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안 제14조의2제2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나. 취급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안 제14조의2제3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 안전관리 준수사항(안 제14조의2제6항)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5.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고위험 병원체 취급 기준(안 제14조의4)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6. 제14조의4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